

제목 : (일본/주제) 서면첨부제도-중소기업 성실신고 검증제 도입-

2009년10월13일(화)

제5회 일한 학술토론회

장소 : 긴끼세리사 회관

일본의 서면첨부제도의 변천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 한국·중소기업 「성실신고검증제도」 도입을 향하여 —

긴 끼 세 리 사 회

목 차

- 1 서면첨부제도의 변천과 개요
 1. 1 서면첨부제도의 변천
 1. 2 세무대리권한관계 (세무대리권한증서)
 1. 3 서면첨부제도의 개요
 1. 4 의견청취제도의 개요
 1. 5 서면첨부제도와 의견청취제도의 관계

- 2 서면첨부제도가 주는 효과와 문제점/첨부서면 작성시 실무적 대응을 중심으로
 2. 1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첨부서면작성기준 (지침) 」 제정
 2. 2 국세청 「서면첨부제도의 운영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및 사무절차 등에 대하여 (사무운영지침) 」 제정
 2. 3 세무대리권한증서 기재 사례·첨부서면 기재 사례 (법인세)
 2. 4 첨부서면 작성시 세리사의 대응 / 실무적 관점에서의 과제검증

- 3 의견청취제도가 부여하는 효과와 유의점
 3. 1 사전통지전 의견청취후 제출된 수정신고관련 가산세 취급
 3. 2 질문검사권과의 관련성
 3. 3 의견청취시의 세리사의 대응
 3. 4 의견청취에 관한 모의사례 (법인세)

- 4 첨부서면제도가 주는 의의
 4. 1 사회환경의 변화와 세리사의 책무
 4. 2 금융기관 등의 대응과 세리사의 역할
 4. 3 세리사의 전문가 책임
 4. 4 세무행정과의 신뢰관계 조성

- 5 끝맺음에 대신하여 / 향후 전망에 대하여

- 6 참고문헌
- 7 참고자료
- 8 관계법령집
 - 세리사법
 - 세리사법 시행령

1 서면첨부제도의 개요

1. 1 서면첨부제도의 변천

(1) 1951년

현재의 세리사법이 시행되었고, 제정 당시부터 불복신청과 관련하여 조사를 할 때 의견청취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 1953년

일본세리사연합회의 세리사법 개정 요망서에, 「세무계산서류의 감사증명」을 세리사 업무로 추가 요청하였고, 당시 大蔵主税局은,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인정 하지 않고 대안으로서 서면첨부제도를 신설하도록 하였다.

(3) 1956년

세리사법 제33조의2 제1항에 서면첨부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법개정에 따라, 세리사가 신고서를 작성할 때 어느 정도 조사하였고, 책임을 갖고 작성하였는가에 대하여, 그 책임 정도를 분명히 하고 세무전문가인 세리사가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당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할 수 있게 되었고 세무행정청도 이를 존중함으로서 현행세리사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정처분전의견청취제도」가 신설되었다.

(4) 1960년

세리사 자신이 작성한 「계산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첨부제도」에 새로이 「심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첨부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자기가 작성한 신고서에 대하여 세리사가 적법한지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개정에 따라 경정처분전의견청취제도에도 적용되어 세리사 업무가 세목전체로 확대된 결과 신고납세방식의 모든 신고서가 서면첨부대상의 범위가 되었다

(5) 2001년

2001년도 세리사법 개정시에, 세리사법 제35조 (의견 청취) 제1항에 「조사관련 사전통지전」의견청취제도가 신설됨과 연동하여 서면첨부제도가 확충되었고, 실시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서, 현행의 서면첨부제도가 체계화되었다.

이 개정에 따라, 세무관서의 직원이 사전에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신고와 관련하여 장부를 조사할 때 세리사법 제30조(세무대리권한의 명시)에 규정된 세무대리 권한증서를 제출한 세리사가 신고서에 서면을 첨부한 경우, 통지 전, 세리사에게 첨부서면 내용에 대해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서면첨부제도의 공동화를 막기 위하여, 1971년도부터 타국 보다 먼저 나고야 국제국 관내에서 시행되어 온 「확인서 첨부제도」는, 2001년 세리사법 개정과 함께 폐지되었다. 이 「확인서 첨부제도」란, 납세자 본인이 정확한 신고 및 납세를 한다는 신고납세제도의 이념에 근접하기 위한 시도로 신고시 세리사가 납세자의 신뢰에 근거하여 책임과 양심을 가지고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신고내용 확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6) 그 후의 동향 - 「서면첨부제도의 보급·정착」에 관한 합의 -

일본세리사연합회와 국세청이 2007년8월에 마련한 「서면첨부제도의 보급·정착에 관한 협의회」에서 2008년6월13일 본 제도의 보급을 위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합의사항이 교환되어, 일본에서 서면첨부제도를 더한층 보급·정착시키는 환경이 정비되었다.(구체적 정비사항에 대하여는 제2장을 참조바랍니다)

참고 자료 (page 200)

1. 일본세리사연합회·국세청 「서면첨부제도의 보급·정착」 문서, 2008년6월13일 합의

1. 2 세무대리 권한관계 (세무대리 권한증서)

서면첨부제도에서 사전통지전 의견청취는, 세리사법 제33조의2에 규정한 서면과 세리사법 제30조에 규정한 세무대리 권한증서를 「갖추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세무대리 권한증서는 일본에서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의뢰자로부터 수권행위를 세리사법상 명확하게 하는 서면으로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종래 세무대리권한증서의 양식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각 세리사회 단위로 위임장으로서 임의서식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세리사법 개정 시 양식이 통일되었다.

○ 세리사법 30조 (세무대리 권한의 명시)

세리사는, 세무대리를 할 때에 재무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세무관공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대리 권한증서]

접 부 인		정리번호	0000000
2009년 7월 21일			
○○세무서장		세 무 대 리 권 한 증 서	
세리사 ,세리사 법인	성명 또는 명칭	근 세 다 로	
	사무소명칭 및 소재지	근세다로 세리사사무소 오사카시 중앙구 타니미치 0-0-0 (전화) 연락처 () 전화())	
	소속세리사회등	간끼세리사회 동 지부 등록번호 등 제0000호	
위 세리사(세리사법인)를 대리인으로 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세리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세무대리를 위임합니다.			
의뢰자	성명 또는 명칭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또는사무소	오사카시 ○○○○○○○○ (전화)	
1 세무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 목	(법인) 세	(소바) 세	(원천소득) 세
년 분 등	년분(년도)	년분(년도)	년분(년도)
	자 2008년 6월 1일	자 2008년 6월 1일	자 2008년 6월 1일
	지 2009년 5월 31일	지 2009년 5월 31일	지 2009년 5월 31일
	()	()	()
2 기타사항			
사무처리 란	부 문	업 종	타부문등 회부 () 부문

1. 3 서면첨부제도의 개요

서면첨부제도는,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에게만 인정된 권리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첨부 가능한 신고서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 또는 신고납부 혹은 신고납입 방식의 지방세 전부가 대상이다. 또한 첨부서면에 대하여는, 관여한 형태의 정도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되지만, 첨부서면의 양식에 대하여는 전술한 일본세리사연합회·국세청 「서면첨부제도의 보급·정착」 합의문서에 의거 국세청에서 2008년6월24일부로 첨부서면의 양식개선에 관한 「법령해석통달」이 발령되었다.(양식은 하기 자료 참조)

참고자료 (Page 202)

2. 「세리사법 제30조 및 제33조의2에 규정한 서면의 양식제정에 대하여」의 일부 개정에 대하여 (법령해석통달), 2008년 6월 24일 제정

(1)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당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세리사법 제33조의2 제1항)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작성할 때에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당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이 첨부서면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신고서를 작성한 세리사 자신이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당한 사항이며, 납세자가 계산하고, 정리한 사항은 아니다.

신고서 작성에 관하여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당한 사항이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 표준 등에 대하여, 예를 들면, ①전표정리 ②각종장부의 기입, 정리 및 계산 ③손익 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의 계산 및 작성 ④세무조정 ⑤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⑥상당사항에 관하여, 어느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하였는가를 상세하게 기입한다.

또한 의뢰자가 직접 작성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관계장부와 원시기록을 대조, 이들 재무서류가 정확히 작성되었는가를 체크한 경우에는, 무엇을 근거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확인하였는지를 상세히 기재한다.

(2) 심사한 사항 및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세리사법 제33조의2 제2항)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타인이 작성한 신고서에 대하여 상당하며 심사하고 신고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그 심사한 사항 및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타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심사한 경우, 예를 들면, 의뢰자가 작성한 신고서에 대하여 그 적합여부만 체크하며, 세리사의 지도에 따라 의뢰자가 신고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세리사가 의뢰자로부터 어떠한 상담을 받아, 심사 시 어떻게 장부를 제시 받았고 어떠한 사항을 심사하였으며,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기재한다. 또한 심사 할 때, 현저한 증감사항이나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과 이유 등도 기재한다.

(計算事項, 審査事項等を記載한 書面の 添附)

第33條의2 세리사 또는 세리사 법인은, 국세통칙법 제16조 제1항 제一호[납부하여야 할 국세의 확정방식]에 규정된 신고납세방식 또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八호 혹은 제 十一호[용어]에 기재된 신고납부 혹은 신고납입의 방법에 따른 조세의 과세표준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해 신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당한 사항을 재무성숙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신고서에 첨부 할 수가 있다.

2. 세리사 또는 세리사 법인은, 전항에 규정한 조세의 과세표준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타인이 작성한 것을 상담받아 심사한 경우에, 당해 신고서가 당해 조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그 심사한 사항 및 당해 신고서가 당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성 되었다는 뜻을 재무성숙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신고서에 첨부 할 수가 있다.

3. 생략

1. 4 의견청취제도의 개요

세리사법 제35조에 규정한 의견청취제도는, 2001년도 세리사법 개정 시 신설된 사전통지전 의견청취(제1항)와 종래부터 경정처분전 의견청취(제2항) 불복신청관련 조사때의 의견청취(제3항)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1) 사전통지전 의견청취

2001년도 세리사법 개정 때 신설된 「사전통지전 의견청취」 제도와 연동된 서면 첨부제도는 적용범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이 규정은 세무직원은 미리 사전통지를 한 뒤 조사를 하는 경우, 세리사법 제33조 의2에 규정한 서면이 신고서에 첨부되어 있고 세무대리권증서를 제출한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있을 때에는, 첨부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 효과로서는, 신고서에 첨부서면 이 첨부되고 세무대리권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전 세리사 에게 의견청취를 한다」고 되어 있어, 그 단계에서 의문점이 해소되어, 결과적으로 실지조사가 생략된다. 또한 실지조사 때에도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에게도 세무조사 시 불편사항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제외된다는 됨을 유의한다.

(2) 경정처분전 의견청취

첨부서면이 첨부된 신고서에 대하여, 국세통칙법 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 경정처분 사유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첨부서면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당해 세리사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를 조사함에 따라 반드시 경정해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에 유의한다

(3) 불복청구관련 조사 때의 의견청취

국세불복심판소의 담당재판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조세에 대한 불복청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당해 불복청구에 관하여 세무대리권증서를 제출한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意見聴取)

第35條 세무관공서의 당해 직원은, 제3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계산사항, 심사사항등을 기재한 서면의 첨부]에 규정한 서면(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첨부서면」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는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신고서에 관계되는 조세에 관하여 사전에 그 자에게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그 장부서류를 조사할 경우에, 당해 조세에 관하여 제30조[세무대리의 권한명시]의 규정에 따른 서면을 제출한 세리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통지를 하기전에, 당해 세리사에 대하여 당해 첨부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2. 서면이 첨부 되어있는 신고서에 대하여 국세통칙법 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할 경우에, 당해 첨부서면에 기재된 바에 따라 당해 경정의 기인이 되는 사실을 세리사가 계산하여 정리하거나, 혹은 상담에 응하며 또는 심사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서장(당해 경정이 국세청 또는 국세국의 당해직원의 조사에 기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관 혹은 국세국장)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당해 세리사에 대하여, 당해 사실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의 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등을 계산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이 명백한 것 또는 계산착오로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불복 심판소의 담당 심판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조세에 관한 불복신청에 관계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 당해 불복신청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서면을 제출한 세리사가 있는 경우에, 당해 세리사에 대하여 당해 사안에 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4. 생략

1. 5 서면첨부제도와 의견청취제도의 관계

일본에서의 서면첨부제도는, 세리사법 제33조의2에 규정한 「서면첨부제도」와 세리사법 제35조에 규정한 「의견청취제도」를 총칭한 것이다. 2001년도 세리사법 개정에서 「사전통지전 의견청취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서면첨부제도의 틀을 유지 하면서 그 존재의의를 비약적으로 확충시켜, 2002년4월1일부터 새로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세리사법 제33조의2에 규정된 서면첨부제도의 변천은, 세리사법 제35조에 규정된 의견청취제도의 변천이기도 하며, 세리사법 제30조에 규정된 세무대리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세리사법 제35조에 규정한 의견청취제도는 전술한 대로 세 종류가 있으나, 그 적용관계는 세리사법 제33조의2에 규정된 첨부서면과 세리사법 제30조에 규정된 세무대리권한증서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정리하면 다음표와 같다.

따라서, 사전통지전 의견청취제도는, 첨부서면이 신고서에 첨부되는 한편, 세무대리 권한증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또한, 이제도의 본질은, 세리사법 제1조에서 말하는 세리사의 공공적 사명을 실무상 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표명하는 것이며, 더욱이 그 취지는 세리사가 신고서 작성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내용까지 관여하였고, 그 신고서를 세무전문가로서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어떻게 조정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며, 그 결과 정확한 신고서 작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첨부서면	세무대리권한증서
①사전통지전 의견청취	○	○
②경정처분전 의견청취	○	×
③불복청구관련 조사 시 의견청취	×	○

○ …… 신고서에 첨부 또는 제출이 의견청취의 요건이다.

× …… 의견청취 요건으로서 요구되지 아니한 것

○ 세리사법 제1조 (세리사의 사명)

세리사는, 세무에 관한 전문가로서,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신고납세제도의 이념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부응하며, 조세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함을 사명으로 한다. (1970년 법 제26호 개정)

2. 서면첨부제도가 주는 효과와 유의점 / 첨부서면 작성시 실무적 대응을 중심으로

2. 1 일본세리사연합회에서는, 전술한 일세련·국세청 「서면첨부제도의 보급 정착」 합의문서에 근거, 첨부서면 작성시의 유의점과 작성기준이 되는 「첨부서면 작성기준(지침)」을 2009년4월1일 제정하였다. 그 지침에는 「첨부서면 작성시 유의점」으로 다음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二 첨부서면 작성시 유의점

1. 서면첨부는 어디까지나 세리사의 권리이며,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와의 위촉계약에 의거,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 세리사의 관여 정도와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신고서의 적정성을 표명하는 것이나, 신고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3. 법령을 준수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의 결과는 신고서에 반영되지만, 첨부서면은 그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4. 서면의 1 란부터 5 란은,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당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며, 이들 란에 전부 기재가 없는 것은 세리사법 제 33 조의 2 에 규정한 사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지침에 따라 첨부서면의 의의가 확실하게 되었으며, 첨부서면은 세리사법에 의한 세리사 고유의 권리로 작성되며 또한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촉계약에 의거 세리사 업무의 하나임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첨부서면은 신고내용을 전면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조사생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세리사는, 신고서 작성시의 과정을 상세히 첨부서면에 기재하며, 이 지침을 서면첨부제도의 의의에 따라 활용할 것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이 지침의 구체적인 작성기준과 각론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신고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기재정도(진보도)를 예시하는 참고자료로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Page 223)

3. 일본세리사연합회 「첨부서면작성기준(지침)」, 2009년 4월 1일 제정

2. 2 국세청 「서면첨부제도의 운영시 기본적 사고방식 및 사무절차등에 대하여 (사무운영지침)」의 제정

국세청에서는, 전술한 일본세리사연합회·국세청 「서면첨부제도의 보급·정착」의 합의문서에 근거 의견청취 후 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서 조사생략 통지를 하는 뜻의 「사무운영지침」이 2009년4월1일 제정되었다.

이 사무운영지침의 개정은, 문서로서 「조사생략통지(의견청취결과에 대한 통지)」를 하기 위한 요령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며 금년 7월10일 이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제도의 호칭에 대하여, 개정 전 사무운영지침에서는 「新서면첨부제도」로 되어 있으나, 개정 후에는 「서면첨부제도」로 변경하였다. 사무운영지침은 「서면첨부제도를 적성하게 운영하고 세무집행을 가일층 원활화 간소화하기 위하여는 서면첨부제도를 더욱 보급·정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세리사연합회와 협조하여 그 보급 등에 대처하고 있다.」고 하여, 이 제도의 보급 및 정착을 위하여는 국세청과 일본세리사연합회의 협조가 불가결함을 사무운영지침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그 일환으로 일본세리사연합회에서 전술한 「첨부서면작성기준(지침)」이 정하여진 것을 명기하고, 이 지침을 참고로 작성된 첨부서면에 대하여, 세리사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전통지전 의견청취」결과,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시점에서 조사는 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을 세리사에게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이하 사무운영지침에 규정된 「의견청취 실시(법인과세부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입니다만 이 개정 사무운영지침의 제정에 동반하여 일본세리사연합회 「첨부서면 작성기준(지침)」과 연동하여 첨부서면제도의 운영시의 환경이 정비되었다고 한다.

참고 자료 (Page 241)

4. 국세청 「법인과세 부문의 서면첨부제도 운영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및 사무절차 등에 대하여(사무운영지침)」, 2009년 4월 1일 제정

(1) 사전통지전 의견청취 실시

총괄관 등은, 첨부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법인을 조사 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세무대리권증서에 기재된 세리사에게 첨부서면 기재사항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조사담당자에게 지시한다.

그리고 첨부서면의 각 란에 전혀 기재가 없는 것은 첨부서면이 첨부되어 있어도 보정의뢰, 의견청취 등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점을 유의한다.

(2) 의견청취의 시기 및 방법

조사담당자는, 사전통지예정일의 1주일부터 2주간 전까지 세무대리권증서에 기재된 세리사에게 의견청취를 한다는 뜻을 구두(전화)로 연락하고, 의견청취일시 및 방법을 결정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는 사전통지예정일의 전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세리사가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한다.

(3) 의견청취내용

의견청취는, 세무전문가로서의 입장을 존중하여 부여된 세리사의 권리의 하나로 자리매김되며 첨부서면을 첨부한 세리사가 신고 시 계산 등을 한 사항에 관한 것과 의견청취전에 발생한 의문점을 해소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입각하여 의견청취 시점에서 의문점이 해명된 경우, 결과적으로 조사로 이어 지지 않게 됨을 인식한다. 예를 들면 현저한 증감사항·증감이유와 회계처리 방법에 변경이 있었던 사항·변경의 이유 등에 대하여 개별·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등, 의견 청취의 기회를 적극 활용한다. 다만, 개별·구체적인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가산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유의한다. (후기 6에 의거, 본고 제3장3. 1 사전통지 전 의견청취 후에 제출된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의 취급을 참조) 또한 경정이나 수정 신고까지는 가지 않으나, 사후 신고나 장부서류의 비치,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지도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견청취시 그 지도사항에 대하여 세리사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4) 의견청취후의 사무

조사담당자는, 의견청취를 한 후 다음사항을 「응점부」에 기재하여 총괄관 등의 결재를 받아, 法人稅歷表 (간접제세는 간접제세조사부)에 편철 한다. 그리고,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한 통지문을 작성 시 응점부와 같이 결재를 받는다.

- ① 상대방, 응점자, 조사대상 법인 명, 응점방법, 응점 일시
- ② 의견청취 내용
- ③ 의견청취 결과 세리사에게 지도한 사항
- ④ 조사로의 연결 유무
- ⑤ 「의견청취결과에 대한 통지문」의 송부여부
- ⑥ 기타 참고사항

(5) 의견청취 결과를 세리사에게 연락

의견청취를 한 결과, 조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리사에게 「현시점에서는 조사대상은 아니다」라는 내용을 원칙적으로 「의견청취결과에 대한 통지문」으로 보낸다. 통지문을 송부하는 경우에 해당 의견청취결과에 대한 통지문(세무서 보관)을 법인세력표에 편철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두(전화)로 하며, 게다가 구두(전화)에 의한 의견 청취결과를 세리사에게 연락하는 경우 「의견청취결과에 대한 통지문」을 송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사후 첨부서면이 적절하게 기록되도록 지도함을 유의한다.

또한, 세리사에게 「현시점에서는 조사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을 연락한 경우에도 그 후 신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의문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로 연결될 수 있다. 그 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다시 의견청취를 한다.

- ① 과세상 지적 사항 또는 경정이나 수정신고로는 가지 아니하나, 사후에 신고나 장부서류의 비치,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지도한 사항
- ② 첨부서면의 각 란에 기재가 없는 것
- ③ ②의 각 란에 기재는 되어 있으나 불비한 경우 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등 ②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6) 의견청취후에 제출된 수정신고서 관련 가산세의 취급

본고 제3장3. 1 사전통지전 의견청취후에 제출된 수정신고서 관련 가산세의 취급 참조

2. 3 세무대리 권한증서 기재사례 · 첨부서면 기재사례 (법인세)

본 절에서는, 서면첨부작성의 실무적 대응으로서 세리사법 제30조에 규정한 「세무 대리 권한증서」 및 세리사법 제33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첨부서면 기재례를 제시한다 (기재사례는 다음 항 이후를 참조바랍니다)

[사례개요 : 법인세 및 소비세]

1. 업 종	종이가공품 제조업 (화장품상자 등의 종이제품 인쇄제조업)		
2. 사업규모 및 결산 · 신고자료			
①청색신고			
②매 출 액	300,000천원		
③소득금액	6,000천원		
④자 본 금	10,000천원		
⑤종업원수	16명		
⑥소비세 관련 사항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	290,000천원		
•세별도 경리방식			
3. 사업 및 결산관련 사항			
①기계 및 설비가 증가하였다			
②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이 있었다			
③자회사주식을 매각하였다			
4. 관여상황 등			
(1) 의뢰자가 작성한 장부서류 등	현금출납장, 외상매출금원장, 외상매입금원장, 임금대장, 받을어음장		
(2) 세리사가 작성한 장부서류 등	세리사가 대체전표를 기표하고 있음 결산서류, 총계정원장, 은행장부, 연말조정업무		
(3) 기 타	시산표는 매월 작성, 보고하고 있다.		
5. 서면작성 세리사			
[개업세리사]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	세리사	긴끼 따로	
서면작성 관련 세리사	세리사	긴끼 따로	

접 부 인		정리번호	0000000
2009년 7월 21일			
○○세무서장		세 무 대 리 권 한 증 서	
세리사 ,세리사 법인	성명 또는 명칭	근 세 다 로	
	사무소명칭 및 소재지	근세다로 세리사사무소 오사카시 중앙구 타니미치 0-0-0 (전화) 연락처 () 전화())	
	소속세리사회등	간끼세리사회 동 지부 등록번호 등 제0000호	
위 세리사(세리사법인)를 대리인으로 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세리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세무대리를 위임합니다.			
의뢰자	성명 또는 명칭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주소또는사무소	오사카시 ○○○○○○○○ (전화)	
1 세무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 목	(법인) 세	(소 바) 세	(원천소득) 세
년 분 등	년분(년도)	년분(년도)	년분(년도)
	자 2008년 6월 1일	자 2008년 6월 1일	자 2008년 6월 1일
	지 2009년 5월 31일	지 2009년 5월 31일	지 2009년 5월 31일
	()	()	()
2 기타사항			
사무처리 란	부 문	업 종	타부문등 회부 () 부문

법인세 확정신고서 (년분 2008년6월1일-2009년5월31일 사업년도분)에 관련

세리사법 제33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첨부서면 (제33조의2 ①)

접 수 인 2009년7월21일

○○세무서장		정리번호	0000000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	성명 또는 명칭	세리사 근 세 다 로				
	사무소 소재지	오사카시 중앙구 타니마치 0-0-0 (전화)				
서면작성관련 세리사	성 명	세리사 근 세 다 로				
	사무소 소재지	오사카시 중앙구 타니마치 0-0-0 (전화)				
	소속세리사회 등	간끼세리사회 동지부 등록번호 제0000호				
세무대리권한증서 제출		유(법인세·소비세·원천소득세)				
의뢰자	성명 또는 명칭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소 및 사무소	오사카시 중앙구 타니마치 0-0-0 (전화)				
본인(당 법인)은 신고서의작성에 관하여 계산하고, 정리하며 또한 상담한 사항은 아래1부터 4란에 기입한 대로입니다.						
1 본인들이 작성하여 장부에 기재한 사항						
장부서류의 명칭		작성기입시 기초가 된 서류				
대체전표,은행장부,총계정원장,자산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 서,주주자본등 변동계산서,계정과목 내역서,감가상각자산일람표		현금출납장,당좌조회표,예금통장,지불일람표, 외상매 출금원장 및 일람표,임금대장,재고표, 받을어음장,매입·외상매입금원장,매출관련청구 서(복사분) 및 납품서(복사분)				
2 제시 받은 장부서류(비고란의 장부서류를 제외)에 기재된 사항						
장부서류의 명칭		비 고				
위 1의 「작성기입시기초한 서류」 외,잔액증명서,사내 외주진행상황표 의5/31분,차입반제예정표,타임카드, 취득자산 증빙서류		매출관련 납품서(복사분)의 7월분-4월분				
사무 처리란	부 문	업 종	의견청취연락사항		사전통지 등 업적	
			년 월 일	세리사명	통지년월일	예정년월일

정리번호	
------	--

3 계산하고 정리한 주된 사항			
구분	사 항	비 고	
(1)	매 출	기말장부 분에 대하여, 익월분 청구서에 계상된 매출 중, 결산일까지 납품완료분을 매출로 계상하였다.	청구서(복사분) 및 납품 (복사분)
	매입·외주· 제조경비	기말장부 분에 대하여, 익월분에 계상된 매입중, 결산일까지 입고완료된 매입등을 계상하였다.	매입·외상매입금원장
	재고자산	결산일에 실지재고조사를 하고 정리한 재고표에 의하여 보고 받고 계상하였다.	보관품에 유의 한다.
	급여, 임금 수당	타임카드와 임금대장을 확인하였고 정확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	(1)중 현저한 증감사항	증 감 이 유	
	제세공과금의 증가 자본금의 감소	부동산 구입에 따른 등기비용(등록면허세 등 642,800엔)과 부동산 취득세 727,400엔이 발생하였고, 고정자산세도 증가하였기 때문 3,000,000엔을 감자, 「4. 상담한 사항」에 기재한 그대로	
(3)	(1)중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한 때	변경 등의 사유	
	없 음		

(2/4)

정리번호	
------	--

4 상담한 사항

사 항	상 담 요 지
자기주식의 취득·소각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에 대하여, 취득가액에 대한 상담이 있어, 적정가를 평가 계산한 결과, 3,000주의 가격이 34,815,000엔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제배당이 발생, 원천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0월0일 자기주식 3,000주를 위 금액으로 구입하고 동일, 동 주식을 소각 자본금 3,000,000엔을 감소시켰고, 배당에 따른 원천세를 기한 내 납부하였다.
000(주)의 주식매각	자회사인 000(주)의 주식 3,000주를 매각시 매각금액을 상담 받고, 적정가액을 평가한 결과 3,000주가 5,946,000엔됨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0월0일 동 주식 3,000주를 위 금액으로 매각하였다.

5 기 타

증빙서류의 보관, 정리상황은 양호하며, 매월15일 전후 시산표가 작성가능 하기 때문에, 결산처리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신고서 및 첨부서면 작성시, 긴끼세리사회의 업무체크리스트를 이용 과목전반에 걸쳐 확인하였다.

(3/4)

정리번호	
------	--

* 추가 기재사항		
A 계산하고 정리한 주된 사항(1)		
B 구 분	C 사 항	D 비 고
감가상각비	취득가액, 내용년수가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였다.	청구서 등
특별세액공제	1. 구입한 기계에 대하여, 조치법 제 42 조의 6 의 조건을 충족하는가 확인하였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였다. 2. 정보기반강화설비 등의 구입에 대하여, 조치법 제42조의11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였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였다.	청구서 등 청구서 및 견적서 등
유가증권매각익	「4. 상당한 사항」에 기재한 그대로	
자기주식,자본금	상 동	
* 추가 기재사항		
A		
B	C	D

(4/4)

소비세 확정신고서 (년분 2008년6월1일-2009년5월31일 사업년도분)에 관련

세리사법 제33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첨부서면 (제33조의2 ①)

접 수 인 2009년7월21일

○○세무서장		정리번호	0000000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	성명 또는 명칭	세리사 근 세 다 로				
	사무소 소재지	오사카시 중앙구 타니마치 0-0-0 (전화)				
서면작성관련 세리사	성 명	세리사 근 세 다 로				
	사무소 소재지	오사카시 중앙구 타니마치 0-0-0 (전화)				
	소속세리사회 등	간끼세리사회 동지부 등록번호 제0000호				
세무대리권한증서 제출		유(법인세·소비세·원천소득세)				
의뢰자	성명 또는 명칭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소 및 사무소	오사카시 중앙구 타니마치 0-0-0 (전화)				
본인(당 법인)은 신고서의작성에 관하여 계산하고, 정리하며 또한 상담한 사항은 아래1부터 4란에 기입한 대로입니다.						
1 본인들이 작성하여 장부에 기재한 사항						
장부서류의 명칭		작성기입시 기초가 된 서류				
대체전표,은행장부,총계정원장,시산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 서,주주자본등 변동계산서,계정과목 내역서,소비세과세구분계산서		현금출납장,당좌조회표,예금통장,지불일람표, 외상매출금원장 및 일람표,임금대장,재고표, 받을어음장,매입·외상매입금원장,매출관련청구 서(복사분) 및 납품서(복사분)				
2 제시 받은 장부서류(비고란의 장부서류를 제외)에 기재된 사항						
장부서류의 명칭		비 고				
위 1의 「작성기입시기초한 서류」 외,잔액증명서,사내 외주진행상황표 의5/31분,차입반제예정표,타임카드, 취득자산 증빙서류		매출관련 납품서(복사분)의 7월분-4월분				
사무 처리란	부 문	업 종	의견청취연락사항		사전통지 등 업적	
			년 월 일	세리사명	통지년월일	예정년월일

정리번호

3 계산하고 정리한 주된 사항		
구 분	사 항	비 고
(1) 차량비	경유대 중 경유거레세는 과세매입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서
투자유가증권양도액	주식양도 매각대금의 5%를 비과세 매출로 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주식양도계약서
(1) 토지 취득	토지 취득가액 중 중개수수료 등의 과세 매입과 비과세 매입이 적정하게 처리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계약서, 영수증 등
기계, 설비 취득	기계와 정보기반강화 설비 등 구입과 관련, 과세매입이 적정하게 처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서 등
(2)	(1) 중 현저한 증감사항 없 음	증 감 이 유
(3)	(1) 중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한 때 없 음	변경 등의 사유

(2/4)

정리번호	
------	--

4 상담한 사항	
사 항	상 담 요 지
없 음	
5 기 타	
<p>증빙서류의 보관, 정리상황은 양호하며, 매월15일 전후 시산표가 작성가능 하기 때문에, 결산처리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p> <p>신고서 및 첨부서면 작성시, 긴끼세리사회의 업무체크리스트를 이용 과목전반에 걸쳐 확인하였다.</p>	

(3/4)

정리번호	
------	--

* 추가 기재사항

A 계산하고 정리한 주된 사항(1)

B 구 분	C 사 항	D 비 고
과세거래 판정	<p>당 사무소에서는 대체전표를 기표할 때에 과세거래 판정을 하며, 컴퓨터에 입력된 소비세 과세구분 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다.</p> <p>경리처리 방식은, 세금 제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p>	청구서 등

* 추가 기재사항

A

B	C	D

(4/4)

2. 4 첨부서면 작성시의 세리사의 대응/ 실무적 관점에서 과제검증

일본의 서면첨부제도는, 2001년 세리사법 개정 시 신설된 사전통지전의 의견청취와 연동된 것이며, 서면첨부제도의 적용범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서면첨부제도와 관련한 세리사의 대응과 견해는 개개의 과제임으로, 본 절에서는 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1) 서면첨부의 유무에 따라 관련 납세의무자를 선별하는 것은 아닌가

(검토)

고문거래처의 상황(관여 년수, 계약내용, 기업규모, 경영관리능력, 경리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은 당연하며, 어느 쪽이든 「모든 관여거래처」를 서면첨부의 목표로 하지만, 대상기업을 선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서면첨부제도는,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작성하거나 혹은 심사한 경우 신고서마다 서면을 첨부할 지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며, 모든 신고서에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전문가로서 평소 관여한 거래처를 지도한 결과, 적법성을 가진 신고서에 첨부를 하는 것이 세리사에게 주어진 사회공공적 사명의 실현과 관련되는 것이다.

(2) 세리사에게 위촉 아니한 자는 첨부할 수 없어 불공평 하지 않은가

(검토)

서면첨부제도가 세리사의 권리로 확대된 것은, 동시에 사회공공적 사명에 관한 재 인식이 요구된다고 한다. 이 사명을 구현화하고 그리고 담보하는 것이 서면첨부제도의 본질이며 위촉 받은 납세의무자만의 메리트를 꾀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조사생략에 따른 조사수임 의무가 줄었다고 해도 이것이 목적은 아니며 또한 진정한 신고서를 조건으로 하는 서면첨부제도는, 위촉 받은 납세의무자만 서면첨부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일본의 신고납세제도아래 장래적으로는 세리사가 관여하는 납세의무자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납세의무자가 서면첨부를 할 단계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단순히 세리사가 관여하지 않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서면첨부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실지조사결과와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세리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가

(검토)

세리사가 첨부서면에 기재한 사항은, 신고서 작성에 관하여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당한 사항(세리사법 제33조의2 제1항) 혹은 타인(납세의무자)이 작성한 신고서를 심사한 사항(세리사법 제33조의2 제2항)이다.

따라서, 신고서의 내용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일시적으로 비위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리사법에 규정된 탈세상당금지와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서면을 첨부하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표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책임의 범위를 명확 하게 하는 것이다.

(4) 첨부서면에 허위기재를 한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검토)

세리사법 제46조에서는, 「일반징계」로 「세리사가, (세리사법) 제33조의2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한 서면에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또는 그 법률 혹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세리사법) 제44조에 규정한 징계처분(계고, 1년 이내 세리사업무정지, 세리사업무금지)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다. 법치국가로서 법령위반, 허위기재를 한 경우 처벌대상 이 됨은 당연하다. 첨부서면의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세리사 자신이 계산하고, 정리하며, 상담 받고 또한 심사한 사항이 일시적으로 그 후 실지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세리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하여 전문가로서의 판단과 사실인정에 따라 기재되어 있으면, 법문 구성상 반사적으로 허위기재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자기책임의 범위를 첨부서면에 기재하고, 의견을 표명 함으로서, 자기자신의 법적 방위를 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5) 세무행정의 원활화·간소화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검토)

서면첨부제도는, 어디까지나 세리사의 판단 하에 임의, 개별적으로 첨부되는 것이며 기재사항도 법으로 정하여진 것은 아니며 세리사 자신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세리사법 제1조에 규정된, 세리사의 공공적 사명에 근거하여 조세에 관한 전문가로서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면은 첨부되는 것이다. 이 독립성은, 조세법을 적용할 때 과세권자(세 무행정) 또는 납세의무자 쌍방의 독립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 표명하는 서면첨부제도는 바로 세리사법 제1조의 사명을 구현화하는 것이다.

타인(납세의무자)이 작성한 신고서를 심사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타인이 작성한 신고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세리사가 심사하고, 그 적법성을 표명하는 것은, 바로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한다라는 세리사법의 근간인 사회공공적 사명이다. 세무행정의 원활화 및 간소화는 세리사법이 요구하는 세리사의 사명은 아니며 국가적인 요청에 입각하여 자기들이 응하는 것으로, 하청적인 의론의 여지는 여쩍 수 없다.

3. 의견청취제도가 부여하는 효과와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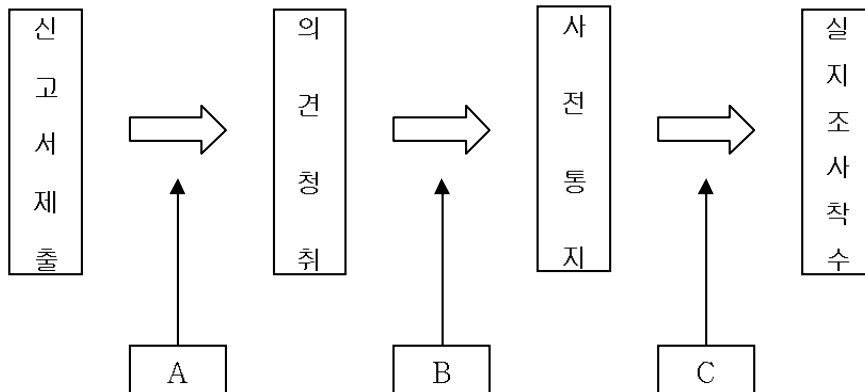
3. 1 사전통지전 의견청취 후에 제출된 수정신고서 관련 가산세 취급

2009년4월1일 제정된 국세청 「사무운영지침」에서는, 의견청취 후에 제출된 수정신고관련 가산세 취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6) 의견청취 후에 제출된 수정신고서 관련 가산세의 취급

의견청취를 하고, 그 후 수정신고서가 제출되어도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견청취를 한 후에 수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 (생략)... 비위사항의 지적이 있었는지의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따라 「경정예지」 유무를 판단기준으로 함으로, 수정신고서가 의견청취시의 개별·구체적인 비위사항의 지적에 근거하여, 「경정예지」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점에 유의한다.

신고서가 제출된 후, 세무서 또는 국세국의 담당직원은 신고서의 심리와 준비조사를 통하여 실지조사대상을 선정하며(표A), 실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사전통지예정일 전에 「사전통지전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된다. 이 의견청취결과 의문점이 해결된 경우 실지조사는 생략되는 것이며 또한 의문점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의견청취 실시 후 실지조사 착수 전의 단계 (표B또는C)에서, 수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과소신고가 산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해야 할 사항이다.



이 검증에서, 수정신고서의 제출이 「조사가 있다는 점」보다 「경정할 것이라고 예지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만, 이를 규정한 국세통칙법 제65조 제5항의 해석과 관련된 학설은, 사실인정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며 또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과정에 세리사 등에게 사전통지전 의견청취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연락도 아니한 단계 혹은 의견청취를 한 후 조사에 착수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무조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 구체적 비위사항이 「어떠한 경위로」 되었는가 라는 개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나의 고찰로서, 사전통지전 의견청취의 단계, 넓은 의미에서 조사착수 후입니다만 개별·구체적인 비위사항의 지적을 받기 전에 세무대리권한을 가진 세리사가 확인 혹은 발견한 사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자신의 의사로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할 것이라고 예지되는 경우」는 아니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 국세통칙법 제65조

① 기한내 신고서 (환급청구신고서를 포함. 제3조에서도 같다) 가 제출된 경우(기한내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항의 규정 적용 시를 포함)에 수정신고서의 제출 또는 경정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의거 제33조 제2항(기한후 신고 등에 따른 납부)의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신고가산세로 부과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동항에 규정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동항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전에 당해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관련 국세에 대하여, 수정신고서의 제출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그국세관련 증가된 차액의 세액을 가산한 금액)이 그 국세관련 기한내 신고세액금액과 50만원과의 큰 금액을 초과하는 때의, 동항의 과소신고가산세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당해 초과부분 세액(동항에 규정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당해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당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전항에서,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용어의 의미는, 당해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一 누적증가차이세액 / 제1항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전 그 국세에 대하여 수정신고서의 제출 또는 경정에 따라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액(당해 국세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 또는 경정관련 불복청구 혹은 고충에 따른 결정, 재결 혹은 판결에 따라 당초의 처분에 변경이 있을 때 이에 따라 감소한 부분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다음항의 규정을 적용 시 동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二 기한 내 신고세액 / 기한 내 신고서(다음 조 제1항 단서 또는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에 따라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해야 할 세액(이들 신고서 관련 국세에 대하여, 다음에 제기하는 금액이 있을 때는 당해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또는 소비세관련 이들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금에 상당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소득세법 제95조(외국세액공제)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 제1항의 수정신고 혹은 경정 관련 동법 제120조 제1항 제5호(확정신고서 기재사항) (동법 제166조(비거주자에 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규정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동법 제120조 제2항(동법 제1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규정한 예납세액 또는 재해피해자에 대한 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관한 법률(1947년 법률 제175호)제2조(소득세의 경감 또는 면제)의 규정에 의한 경감 혹은 면제 받은 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조 제41호(정의)에 규정한 중간납부액, 동조 제42호에 규정한 청산 중 예납액, 동법 제65조(소득세액공제) (동법 제144조(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69조(외국세액공제), 제81조의14(연결사업 년도의 소득세액공제) 혹은 제81조의15(연결사업 년도의 외국세액공제)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 동법 제90조(퇴직연금 등 적립금관련 중간신고 납부) (동법 제145조(외국법인에 대한 준용)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그 금액에 수정신고서의 제출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 또는 경정 후 법인세액) 또는 동법 제100조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소득세액을 공제)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소득세액

다 상속세법 제20조의2 (재외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공제), 제21조의8 (재외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공제), 제21조의15 제3항 및 제21조의16 제4항(상속 시 정산과세에 관한 증여세 상당액의 공제)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계산의 기초로 된 사실 중 그 수정신고 또는 경정 전 세액(환급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포함)의 계산의 기초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 항에 규정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근거한 세액으로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이들 항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항의 규정은, 수정신고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그 제출이 그 신고관련 국세에 대한 조사가 있음에 따라 당해 국세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예지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2 질문검사권과의 관련성

세리사법 제33조의2에 규정된 첨부서면은, 세리사의 권리행사로서 첨부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작성 또는 납세의무자에게 위촉된 세리사가 작성하는 서류는 아니다.

따라서, 세리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전에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세무당국과 세리사 등과의 관련만인 것이며 또한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리사 등이 작성한 첨부서면의 기재사항만이며, 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아니다.

한편 질문검사권이란, 세무직원이 과세처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 기타의 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53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정된 과세요건의 사실에 관하여 질문 및 검사를 하는 권한인 것이며, 세리사법 제33조의2에 규정된 첨부서면에 관한 의견청취는, 어디까지나 세리사 등의 자주적이고 임의로 작성한 첨부서면에 관한 의견청취이며, 의견진술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질문검사권의 행사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세무당국도 서면첨부제도를 운용 시, 고도전문가인 세리사의 입장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의견청취시에 기재된 사항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질문 하는 등, 의견청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 법인세법 제153조 (당해 직원의 질문검사권)

- ① 국세청의 당해 직원 또는 법인의 납세지의 소관세무서 혹은 소관 국세국의 당해 직원은,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연결 모법인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 또는 소관 국세국의 당해 직원이 그 연결 모법인의 각 연결사업년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결 자회사를 포함)에게 질문하고, 또한 그 장부서류(작성 또는 보존에 대신하여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식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는 인식 불가능한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으로 작성 또는 보존되어 있는 경우, 당해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편 및 제162조 제3호(허위기재 한 중간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죄)에서도 같다) 기타 자료를 검사 할 수 있다.
- ② 연결 자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소관 세무서 또는 소속 국세국의 당해 직원은, 연결 모법인의 연결사업년도의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조사 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연결 자법인 및 당해 연결 모법인에게 질문하고, 또한 그 장부서류 기타자료를 검사할 수 있다.

3. 3 의견청취시의 세리사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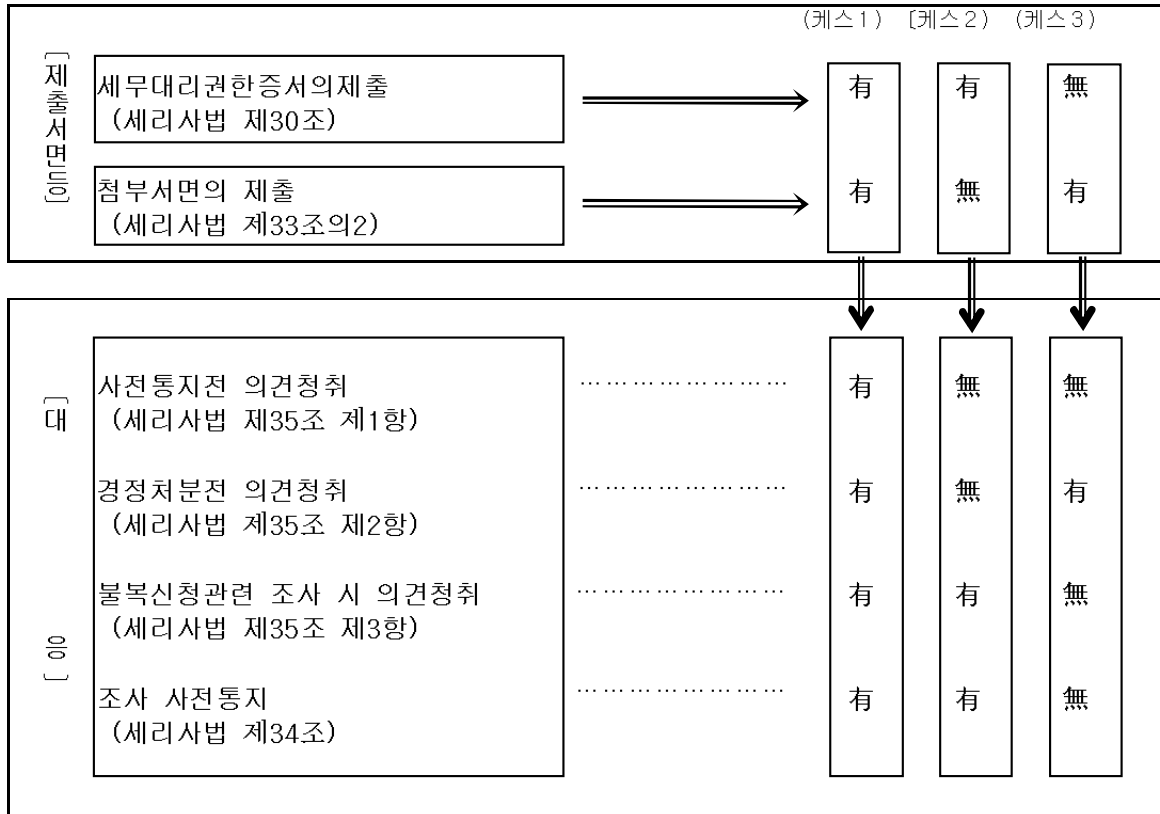
서면첨부제도의 육성에는, 서면의 기재내용이 충실해야 하고 적극적인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세리사도 세무관공서도 의견청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기대된다.

세리사법 제35조에 규정된 「의견청취」의 목적은 전술한 대로 질문검사권의 요건인 조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와는 다르며, 세리사가 작성한 신고서 또는 세리사가 심사한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 제도를 보급· 정착시켜 가기 위하여는 세리사 및 세무관공서가 상호 입법취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신뢰관계가 기초로 된다.

세무전문가인 세리사는, 의견청취시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만 하며, 그러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유의점을 아래와 같이 열거한다.

- (1) 서면첨부제도는, 세리사에게 부여된 권리의 하나로서 세리사법 제 1 조의 「세리사의 사명」을 구현하는 것이며 세리사의 입장을 존중하고 세무집행을 가일층 원활화 하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 (2) 의견청취는, 세무직원에게 부과된 의무적 규정으로 마련되었으며, 사전통지전의 의견청취는, 세무대리권증서를 제출한 세리사에게 하는 것이다.
- (3) 서면첨부제도를 육성하기 위하여는, 서면의 기재내용 충실과 적극적인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제도의 취지· 목적에 입각하여, 개별· 구체적인 의견과 회답을 하는 등 의견청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기대된다.
- (4) 세리사법 제33조의2에 규정된 첨부서면에 대하여는, 사전통지전 의견청취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서의 심리나 조사여부를 판단 할때도 활용된다.
- (5) 관여선 납세자의 개황과 경영상태를 세리사가 어느 정도 파악하였는가를 어필하고, 서면에 기재된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표명하는 것이다.
- (6) 세리사의 관여 정도 및 세리사가 계산하고, 정리한 주된 사항의 기재내용에는 세리사 업무의 체크 체제 및 정확성을 나타낸다.
- (7) 현저한 증감사항의 기재내용에는, 세리사가 분석한 사항과 검토한 사항의 해명이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낸다.
- (8) 현저한 증감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정과목에 연동하여 증감한 과목과 소비세와 원천소득세와의 관련사항도 확인한다. 또한 그 전말을 기재한다.
- (9)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익조정과 연결된 항목이므로, 변경의 이유 및 타당성 검토를 한다.
- (10) 서면에 기재사항을 간단하게 한 경우나, 기입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의견청취시에는 개별·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

【제출서면 등과 그 대응 케이스】



3. 4 의견청취에 관한 모의사례 (법인세)

본 절에서는, 의견청취에 관한 실무적 대응으로, 본고 「2. 3 세무대리 권한증서 기재사례·첨부서면 기재사례 (법인세)」에서 작성된, 첨부서면 관련 의견청취의 모의 사례를 제시한다.

[사례개요 : 법인세 및 소비세] 종이가공품 제조업(화장품상자 등 종이제품 인쇄제조업)

등장 인물 세 리 사 : 긴끼세리사회 동지부 소속 근세 다로 회원
세무서직원 : ○○세무서 법인과세 제1부문 ○○○○총괄관
-- 상호간 명함교환 --

세무서직원 /

오늘 바쁘신 중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주식회사○○○의 법인세확정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서면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세리사법 제35조 에의거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첨부된 서면에 대하여 선생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우선 이 법인에 관여한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리사 /

당 사무소에서는, 매월 회사를 방문하여 회사가 작성하고 있는 현금출납장, 외상매출금원장, 외상매입금원장, 임금대장, 받을어음장의 기장상황을 확인하며, 이를 토대로 대체전표를 작성합니다. 그 달 중 특수한 거래나 분개가 어려운 거래에 대하여는 바로 설명을 듣고, 증빙류를 확인하여 분개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체전표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매월 당 사무소에서 총계정원장 및 시산표를 작성합니다. 이때 의문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마다 전화와 팩스 로 증빙등을 확인하여 지도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시산표를 회사에 보고합니다.

결산에서는, 모든 계정과목에 대하여 다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잔액확인 이 가능한 것은 확인작업을 하며, 결산 및 신고서 작성업무에는 긴끼세리사회가 작성한 업무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시 받은 장부서류의 범위 내에서 이 회사의 결산서 및 법인세신고서는, 법령의 규정대로 적성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직원 /

첨부서면의 「계산하고 정리한 주된 사항」의 기재에 대하여 보충할 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세리사 /

매출금액, 매입·외주·제조경비 및 재고자산의 결산처리에 대하여는, 마지막에 계상, 받은 물품을 확인하는 등 기재된 그대로 매월 처리하며 대체 전표를 당 사무소가 작성하므로, 정확한 손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임카드와 임금대장도 필요할 때 수시로 대조하게 하며, 감가상각 자산도 구입 시에, 제각·대물 받은 것은 없는지 묻는 등, 가공인건비, 부외자산은 없는가 등, 적정한 신고를 하도록 평소부터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별세액 공제를적용할 때 확인한 청구서, 견적서등의 자료와 오늘 가지고 온 부동산구입 관련계약서, 영수증등도 가지고 왔습니다.

(기계, 기구비품, 부동산구입 관련자료를 손수 건네다)

세무서직원 /

예,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소각과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세리사 /

알겠습니다. 우선 배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사장에게는 세명의 아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 첫째와 셋째는 각각 자기들의 길을 가고 있으며, 둘째가 가업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모회사가 아닌, 자회사의 사장으로 출발 키로 하였습니다. 최근, 사장은 자신의 건강에 불안을 느껴, 혹시 둘째가 제 몫을 할 수 있을 때 까지 본인이 은퇴할 때를 생각하여 100%출자한 자회사인 자기의 사적 회사에 대하여, 최악의 경우 사업매각도 포함하여 모회사를 정리 하여,둘째에게 자기의 재능에 맞는 이 자회사의 사업을 승계시키는 생각입니다.

이 사장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번에 안을 마련하여, 평가문제를 포함한 어려운 안건입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하였던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각과 그 방법은, 사장소유의 주식액면 3백만엔을 모회사에게 매각하고, 이 매각자금으로 자회사 주식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사장으로부터 자기주식을 구입한 때 및 자회사 주식을 사장에게 매각시의 1주당 평가명세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복사본 입니다.

세무서직원 /

정말 그럴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세리사 /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의문점은 모두 해소되었습니까. 기타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가능한 의문점이 해소되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세무서직원 /

선생님의 공손한 설명을 들었으며, 서면첨부에 대한 저의 질문은 이것뿐입니다.

세리사 /

(잊은 것은 없는지 생각한다)

아, 서면에 기재한 사항 중 잊은 것이 있습니다. 서면을 보충하는 관점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좋습니까

세무서직원 /

예, 보충사항으로서 듣겠습니다.

세리사 /

현저한 증감사항에 대하여 보충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의 구입과 설비투자 등의 증가로 차입금이 늘었으며, 이에 따라 지급이자와 차입금에 대한 보증료와 설비에 따른 손해보험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중 선급비용에 대하여는 월단위로 계산하며, 미경과분은 자산계정으로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직원 /

그렇네요, 이것 때문에 지급이자 및 보험료가 많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기타 선생님께서 진술하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세리사 /

의견은 이것뿐입니다.

세무서직원 /

그럼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지도덕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현시점에서는 실지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서면첨부제도가 주는 의의

4. 1 사회환경의 변화와 세리사의 책무

일본의 사회환경은, 지난해 가을 이후 세계적인 경기후퇴를 배경으로, 내외에 설비 투자와 개인소비의 억제로 국민의 예상을 초월한 영역까지 크게 변화하였고 또한 질적·양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일본의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하여 일본 은행의 白川총재는 2009년8월31일 담화에서 「일본의 경기는,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구미제국을 훨씬 상회하는, 대폭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세리사를 둘러싼 환경도 또한 크게 변모하고 있으며 세법과 그 거래의 복잡화에 따라, 2001년 세리사법 개정을 계기로 국세전자신고·납부시스템(e-Tax)과 지방세 포탈시스템(eLTAX)의 도입, 중소기업 회계기준의 검토 그리고 2006년5월 1일 시행된 회사법상 「회계참여」가 새로운 업무로 추가됨에 따라, 세무·회계의 고도전문가로서의 세리사의 지위가 향상되었고, 그 업무분야는 앞으로 더욱 더 다양화되고, 넓어지리라 예상된다.

이렇게 일본에서 세리사는, 그 사회적 역할을 높이고, 비즈니스 찬스를 증가시키는 한편, 그 반면에 세리사를 둘러싼 리스크도 증대하고 있는 현상이며, 본고의 주제인 서면첨부제도를 포함하여 우리들 세리사는, 어떻게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사회로부터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세리사법에 규정된 세리사의 권리인 서면첨부제도를 실천하고,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할 때 단순한 서면으로서의 제출이 아닌 고도전문가인 세리사가 사무소의 업무수준과 품질향상의 관점에서, 그 책무를 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작성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4. 2 금융기관등의 대응과 세리사의 역할

일본에서 지난해 중소기업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융자동향에 대하여, 기업을 총괄적으로 판정하기 위하여, 계수적 지표인 재무제표 외에 세무신고서, 과목의 내역자료도 당연히 요구되는 경향이다. 금융청에서 공표한 「금융조사 매뉴얼」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정세의 실정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중소·영세기업용 대출금의 안정성 평가시 중소·영세기업의 특성을 참고하여 재무상황뿐 아니라 기업과 대표자와의 일치성, 기업의 기술력과 판매력 등 기업의 경영실태를 참조하여 판단할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 서면첨부제도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세리사가 자기의 책임과 권리로 진정한 재무제표를 근거로 적법하고 적정한 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서면으로 표명하는 것은, 그 파급효과로서 중소기업등 관여선이 금융기관에 신뢰양성에도 이바지 한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기업의 정보공개를 촉진시키는 정세하에서, 서면첨부의 효과가 세무당국과의 대응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넓게는 금융기관을 비롯 타 관청이나 사회에 그 존재를 알리는 것이 기대된다.

4. 3 세리사의 전문가 책임

일본에서는 종래 전문가 책임을 법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의료과실과 변호과실과 같이, 의사나 변호사 등 이었으며, 세리사에게 법적책임이 추궁된 예는 적었다고 말해 왔습니다만, 근래에는 세리사의 책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례가 점차 증가되기 시작하였고, 이 외 자기부담으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추측된다.

이러한 배경에는,국제화 속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복잡화한 사회에서 전문가의 사회적책무에 대한 기대와,위촉자인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옹호하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사법자세이며, 현재 고도전문가로서의 세리사 업무자세를 엄격히 묻게 되었다고 한다.

오늘, 이렇게 세리사에게 전문가책임을 묻는 소송사회에서는, 업무수행시 전문가로서 적정한 주의는 물론, 평소 세무전문가로서 지식, 경험, 능력을 높여 사회적 부탁에 응 하고 자기연찬의 노력은 당연하며, 또한 동시에 세리사도 법적인 전문가 책임을 의식 해야 한다고 한다.

서면첨부제도도, 그 범위에서 세리사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으로 하는 것이며,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판단도 중요한 의사표시이다. 그러나, 첨부서면에 명확히 자기의 책임 범위를 기재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세리사에게 부여된 권리 행사와 결과로서 자기 자신의 법적 방위기능도 하는 것이므로, 금후 서면첨부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기대된다.

4. 4 세무행정과의 신뢰관계양성

일본에서 서면첨부제도는, 세리사의 권리이며 서면을 첨부하는 것, 또한 첨부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기재내용에 대하여는 그 세리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다.

한편 과세권자인 세무관공서에서도 첨부서면의 기재내용 및 사전통지전의 의견청취 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그 담당관의 재량으로 되어있음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서면첨부제도를 보급· 정착시켜 가기 위하여는 세리사 및 세무행정이 입법취지에 따른 운용이 요청되며, 신뢰관계의 양성이 기초가 된다.

세리사는 이 제도의 취지에 따라 첨부서면을 성실히 작성하고, 그리고 고도전문가 로서 의견진술을 하는 역량을 묻게 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일정수준의 업무제공과 적절한 지도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서면첨부제도가 보급되고 성과를 얻을 때 제도의 입법취지가 실현되었다고 한다.

또한 세무행정은 이 제도를 운용할 때, 세리사의 입장, 의견진술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며, 조사와 관련 사전통지전 의견청취시 첨부서면의 기재내용을 가능한 성실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2009년4월1일 제정된 「사무 운영지침」을 직원에게 주지시켜, 통일적인 제도의 운영을 도모한 결과,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최종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혜택을 향수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5 끝맺음에 대신하여 / 향후 전망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일본에서의 서면첨부제도에 대하여 첨부서면의 효과와 유의점 및 조사 관련 사전통지전의 의견청취 취급등, 제도의 변천에 입각하여 실무적 대응을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였다. 이 제도는 2001년 세리사법 개정시 신설된 「조사관련 사전통지전 의견청취(세리사법 제35조 제1항)에 연동하여 서면첨부제도의 적용범위가 비약적으로 확충되었고 세리사법에 부여된 「세리사의 권리」로서 시행된 것이다. 게다가 서면첨부 제도에서 「조사관련 사전통지전 의견청취」는, 세리사법 제33조의 2에 규정된 첨부 서면과 합하여 수권된 세무대리권한이 세리사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세무대리권한증서)의 제출이 요건으로 되어있다.

또한 첨부서면제도에 관한 세리사의 대응과 견해는 개개의 과제이므로 본고에서는, 실무적 관점에서의 과제에 대하여 검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맞추어 일본에서의 서면첨부제도가 주는 의의에 대하여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술한대로 첨부서면의 작성은 임의이며, 신고서에 서면의 첨부여부, 또한 첨부서면의 기재내용에 대하여도 전부 세리사의 재량인 것이다.

일본에서 서면첨부제도의 활용상황은 2001년 세리사법 개정시 적용범위가 확대된 후 매년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래 표와 같이 전국에서 5.7%(법인세·2007년 사업 년도)로 현재 양성단계에 있다.

세리사법 제33조의2에 규정한 서면의 첨부비율 (법인세)

출처 : 국세청 「실적평가서」 (단위 : %)

회계연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서면첨부비율	4.4	4.6	4.9	5.4	5.7

세리사가 서면첨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연성, 더욱이 그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1970년 세리사법 개정시 일본의 「조세법률주의」와 「신고납세제도」를 구현화 한 세리사법 제1조의 「세리사의 사명」에 있다. 조세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납세 의무의 적절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신고납세제도의 이념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이며 적절한 신고와 납세에 입각하여야 한다. 그 때에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부응하게 되는 것은 누군가? 그것은 세무 및 회계에 정통한 고도전문가인 우리들 세리사이다. 세리사와 세무행정의 본질적 역할은, 세리사가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신고지도의 충실 그리고 세무행정에서는, 세리사를 존중하는 자세와 세리사의 엄정한 신고지도를 받은 적절한 신고서를 최대한 존중하여 이를 인정하고, 실지조사의 생략으로, 더욱 적절한 납세가, 양심적이고 전문적인 세리사가 관여하므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추어 볼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은 서면첨부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며 또한 정도이다.

따라서, 세리사회와 세무관공서는 이 제도를 보급· 정착시켜가기 위하여 입법취지에 따른 운용을 꾀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협의가 요청되나, 현재 일본의 각 세리사회에서는 각 국세국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긴끼세리사회에서는, 2009년도 중점시책으로 「서면첨부제도의 보급· 정착을 꾀하며, 세리사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실시한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올리고, 세리사에 대한 연수회 개최와 서면첨부제도의 운용시 신뢰관계가 기초로 되는 세무행정 과 계속적 협의를 통하여 세리사에게 권리로 부여된 서면첨부제도를 보다 보급· 정착 코자 전 회원이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서면첨부제도의」 변천과정과 구조가, 앞으로 세무조사방식을 대신 하는 「사전검증」에 근거한 한국· 중소기업 「성실신고검증제」 도입예정을 향한 충분한 지표가 되기를 절망하는 바이다.

이 상

(참고문헌)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監修「税理」, 서면첨부제도가 확충 실시됨에 따른 질문검사권의 내용, 岸田貞夫, 2002년8월1일호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監修「税理」, 가산세의 부과와 그 대응, 宮川雅夫, 2002년8월1일호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監修「税理」, 불복청구에의 移行과 그 판단 加藤義幸, 2002년8월1일호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編 / 宮川雅夫 著「신 서면첨부제도의 이론과 실무」, 2002년12월25일 발행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編 / 坂田純一 著「실천세리사법(제 2 판)」, 2003년12월15일 발행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監修「税理」, 연결납세법인의 세무조사, 岩淵尚樹, 2004년10월1일호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監修「税理」, 서면첨부제도의 이용과 세무조사, 西村公克, 2004년10월1일호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監修「税理」, 신서면제도의 신설, 近藤新太郎, 2004년10월1일호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監修「税理」, 첨부서면의 작성·제출, 林仲宣, 2005년1월1일호
- 日本税理士会連合会「添付書面作成基準(指針)」, 2009년4월1일 제정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編「신세리사법(三訂版)」, 2009년7월10일 발행
- 日本税理士会連合会 監修「速報税理」, 総特集 実践書面添付制度, 西村公克, 2009년9월1일호
- 国税庁長官「法人課税部門의 書面添付制度 運用시의 基本的 사고방식 및 사무절차 등에 대하여(事務運営指針)」, 2009년4월1일 제정
- 財団法人日本税務研究センター編「税研」, 書面添付를 생각한다면杉田宗久. 08년11월20일호
- 近畿税理士会 編「税務行政適正절차 Q & A」税務調査編, 1992년6월15일 발행
- 近畿税理士会 編「書面添付制度実務매뉴얼」, 2004년3월10일 발행
- 近畿税理士会 編「(改訂版) 書面添付制度実務매뉴얼」, 2006년3월10일 발행
- 近畿税理士会 編「(増補改訂版) 書面添付制度実務매뉴얼」, 2008년3월10일 발행
- 近畿税理士会 編「(改訂版) 業務체크리스트集」, 2008년3월10일 발행
- 近畿税理士会 編「税理士業務必携(四訂版)」, 2009년3월10일 발행
- 大阪・奈良税理士協同組合 編 / 大江晋也 外 著「税理士를 위한 서면첨부제도 활용 매뉴얼」, 2002년7월1일 발행
- 新日本法規 編 / 千葉寛樹 外 著「税理士法改正에 따른 書面添付制度의 活用과 기재에」 2002년11월2일 발행 외, 近畿税理士会発行物 月次刊行物

참 고 자 료

1. 일본세리사회연합회·국세청 「서면첨부제도의 보급·정착」 문서, 2008년6월13일 합의 /200
2. 「세리사법 제30조 및 제33조의2에 규정한 서면양식 제정에 대하여」의 일부 개정에 대하여 (법령해석통달) , 2008년6월24일 제정 /202
3.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첨부서면작성기준 (지침) 」, 2009년4월1일 제정 /223
4. 국세청 「법인과세 부문의 서면첨부제도의 운영시 기본적 사고방식 및 사무절차등 에 대하여 (사무운영지침) 」, 2009년4월1일 제정 /241

관 계 법 령 집

- 세리사법 /315
- 세리사법시행령 /354

(일본/부제)

회계참여제도

「경과 후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최근의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사에 관한 각종 제도를 재점검하고 이를 현대용어로 표기하여, 알기 쉽게 재편성한 「회사법」과 법 시행에 따른 9개의 관계법률의 폐지 및 필요한 조치를 정한 「회사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이 2006년 5월1일 시행되고 있다.

「회사법」에서는, 우리나라의 회사법제 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도뿐 아니라, 외국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써 회계참여제도가 신설되었다.

1. 신설목적

세리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자가 취임을 전제로하여, 주식회사의 내부기관과 같은 위치이면서 내부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며, 이를테면 사외이사와 동등한 입장인 제도로써 신설되었다.

2. 신설취지

(1) 회계참여의 「의의」

회계참여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계에 관한 전문식견을 가진 자(세리사 및 공인회계사)로서 이사·집행역과 공동으로 계산서류를 작성하며 당해 계산서류를 이사·집행역과 별도로 보관하며, 주주 및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명시하는 등을 그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기관을 말한다.

(2) 회계참여의 「기능」

특히, 회계감사인을 두지 아니한 중소기업에서 세리사 등이, 이사·집행역과 공동으로 계산서류를 작성하고 이사·집행역과는 별도로 계산서류를 보관, 명시하는 직무를 담당함에 따라 이사·집행역에 의한 계산서류의 허위의 기재나 고의적 수정을 억제하며, 기재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이사·집행역이 계산서류의 작성과 주주에 대한 설명이 줄어들게 되어, 이사·집행역이 경영에 전념할 수가 있다.

3. 세리사 사명과의 관계

세리사법 제1조의 사명, 특히 「독립된 공정한 입장」과 「회계참여제도」와의 관련에 대하여, 회계참여는 회계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로서 세리사의 회계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제안된 제도이며, 내부기관으로서 평가되었다고 해도 직무수행시 전문가로서 독립된 식견을 발휘할 것이 기대되는 제도이므로 「독립된 공정한 입장」이 손상되는 염려는 없다.

4. 경과

(1) 회계참여제도와 두 개의 중요한 지침

회계참여제도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계참여의 직무수행상 일정한 룰이 필요하므로 일본세리사연합회 및 일본공인회계사협회 등은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과 「회계참여의 행동지침」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은 회계참여가 이사등과 계산관계서류를 공동으로 작성 시 준거해야 할 회계처리의 판정기준이 되며, 「회계참여의 행동지침」은 회계참여가 직무수행 시 실무에 참고로 하기 위한 행위의 규범이 된다.

이 두 개의 지침은 회계참여로서 직무수준의 동일성 확보가 주목적이며 이 제도의 사회적 신뢰성 확보가 목적이다.

(2) 세리사 손해배상보험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의 신설이 불가피 함에 따라 일세련에서, 회계참여에 취임한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기간 중에 일본국내에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받는 손해에 대하여, 전보한도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불하는 「회계참여 배상책임보험」을 신설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험 개요

1. 상품명	회계참여 배상책임보험
2. 약관구성	업무과오배상책임보험 보통보험약관+회계참여 특약조항
3. 계약자	일본세리사회 연합회
4. 배상 피보험자	세리사 혹은 세리사법인
5. 가입자(보험료 부담자)	세리사 혹은 세리사법인
6. 보험기간	1년간
7. 인수보험회사	(주)손보JAPAN, 동경해상일동화재보험(주)

(3) 대외PR 인쇄물

- 「회사의 대외적 신용도 향상에 회계참여제도」 (일본세리사회 연합회)
- 「회계참여 권유」 (긴끼세리사회)

5. 현상

(1) 세리사 자격증명서(회계참여용) 발행건수 및 발행건수의 추이

① 세리사 자격증명서(회계참여용) 발행건수 (2009년 7월말 현재)

会名	会別発行数
東京	389
東京地方	56
千葉県	42
関東信越	121
近畿	388
北海道	87
東北	56
名古屋	60
東海	100
北陸	49
中国	59
四国	24
九州北部	67
南九州	78
沖縄	4
計	1,580

※ 전국에서 공인회계사의 자격증명원 발행건수(개인)는 328건(7월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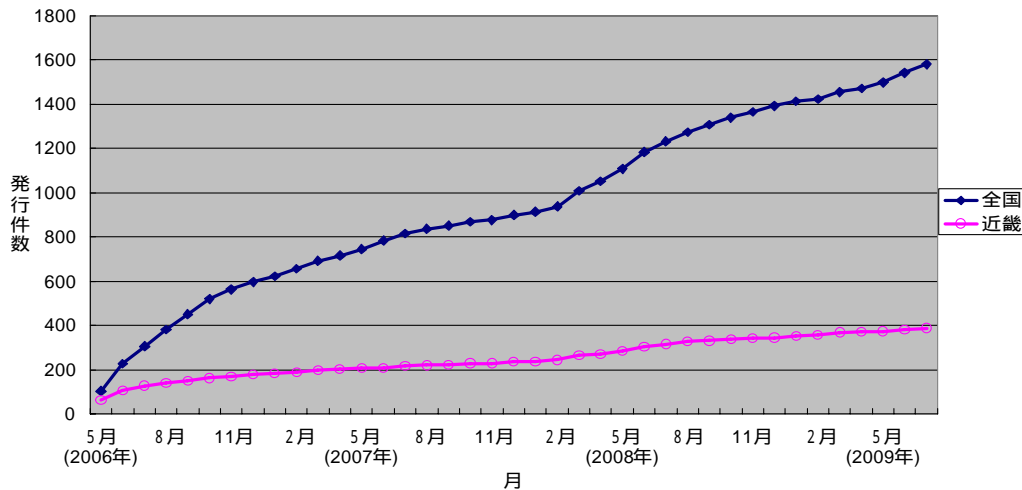
※ 최고 취득건수 15건

② 세리사 자격증명서(회계참여용) 발행건수의 추이(개인 : 월차누계)

월	전국 (건)	긴끼 (건)
2009년 7월	1,580	388

세리사 자격증명서(회계참여용) 발행건수의 추이

税理士資格証明書(会計参与用)発行件数の推移



(2) 「회계참여에 관한 앙케이트 결과보고」 (일본세리사연합회 공표자료에서 발췌)

조사개요

- 【조사목적】 회계참여제도의 보급추진을 꾀하기 위한 정보수집
- 【대상자】 세리사 자격증명서 취득자
- 【조사방법】 우송 앙케이트로 실시
- 【조사기간】 2008년10월20일 ~ 2008년11월20일
- 【회수율】 52.7% (898건 송부/474건 회수)

문 회계참여 취임경위 (복수회답 있음)

회 답	비율	회답수
관계상대방의 요청	73.9%	292
금융기관으로부터 요청	1.3%	5
본인 스스로	27.6%	109
기 타	3.5%	14
무회답	1.0%	4

문 회계참여 취임기업의 고문세리사도 겸하고 있는지(복수회답 있음)

회 답	비율	회답수
겸하고 있다	92.7%	366
겸하고 있지 아니다	7.3%	29
무회답	1.3%	5

문 취임 시 회사에 요청한 사항

회 답	비율	회답수
회사법의 준수	50.9%	201
회계참여제도의 이해	70.9%	280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의 적용	57.5%	227
내부통제 확립	20.0%	79
이사회회의 충실	22.3%	88
회계조직의 충실	19.7%	78
기타	3.0%	12
무회답	2.0%	8

문 취임한 기업 수 [사]

회 답	비율	회답수
1사	78.7%	311
2사	12.9%	51
3사	5.1%	20
4사	1.0%	4
5사 이상	0.8%	3
무회답	1.5%	6

문 취임기업의 자본금에 대하여 (복수회답 있음)

회 답	비율	회답수
300만엔 미만	4.6%	18
300만엔 이상 1000만엔 미만	12.7%	50
1000만엔 이상 3000만엔 미만	55.4%	219
3000만엔 이상 5000만엔 미만	17.5%	69
5000만엔 이상 1억엔 미만	13.4%	53
1억엔 이상	6.3%	25
무회답	1.3%	5

문 취임기업의 창업년수에 대하여 (복수회답 있음) (

회 답	비율	회답수
5년 미만	21.3%	84
5년 이상 10년 미만	11.4%	45
10년 이상 20년 미만	15.4%	61
20년 이상 30년 미만	19.5%	77
30년 이상	43.5%	172
무회답	1.5%	6

문 1사당 회계참여보수(매월) (복수회답 있음)

회 답	비율	회답수
5만엔 이하	39.7%	157
5만엔 초과 10만엔 이하	24.1%	95
10만엔 초과 20만엔 이하	13.9%	55
20만엔 초과 30만엔 이하	3.5%	14
30만엔 초과 40만엔 이하	1.5%	6
40만엔 초과 50만엔 이하	0.3%	1
50만엔 초과	1.3%	5
기 타	24.1%	95

문 회계참여에 취임하여 좋았던 점 (복수회답 있음)

회 답	비율	회답수
회사의 금융기관과 거래처로부터 신용도가 높아졌다	32.9%	130
경영자로부터 신뢰도가 증가되었다	46.1%	182
이사회가 충실해 졌다	20.5%	81
보수를 얻을 수 있었다	22.5%	89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적용의 동기가 되었다	25.8%	102
자신의 역량이 향상되었다	42.3%	167
기 타	3.3%	13
무회답	7.6%	30

문 일세련에서 요구하는 시책 및 제도의 보급·정착에 필요한 것은(복수회답)

회 답	비율	회답수
대외PR 확대	50.6%	240
실무연수회 개최	45.4%	215
상담창구 설치	20.3%	96
취임자의 네트워크 설치	13.1%	62
우대용자제도 추진	36.1%	171
보험제도 보급	12.2%	58
기 타	4.4%	21
무회답	10.1%	48

(3) 「중소기업청 앙케이트 조사결과」 (중소기업청 공표자료에서 발췌)

- 추출표본 수 : 20,000건
- 조사대상 :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부동산업,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 조사방법 : 우송법
- 조사실시기간 : 2008년2월15일 (금) ~ 2월29일 (금)
- 회수표본 수 : 4,569건 (총4,802건 중 대기업 자회사 및 무효회답을 제외)
- 회수율 : 24.0%

문 「회계참여제도」의 도입상황에 대하여

회 답	비율
1. 이미 도입하고 있다	8.5%
2. 앞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2.3%
3. 주위상황을 보아 가면서	12.8%
4. 도입 할 생각이 없다(6.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29.5%
5. 제도를 몰라서 검토 않고 있다(6.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26.4%
6. 유한회사라서, 제도와 관계없다	14.7%
7. 무회답	5.9%

문 회계참여를 의뢰한 회계전문가에 대하여

회 답	비율
1. 세리사	73.0%
2. 세리사법인	9.4%
3. 공인회계사	15.5%
4. 감사법인	0.5%
5. 무회답	1.6%

문 회계참여를 둔 이유 <설치예정이유>에 대하여 (복수회답)

회 답	비율
1.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신용도를 높이고자	36.2%
2. 거래처로부터 신뢰를 받기위하여	16.9%
3. 고문공인회계사 및 세리사로부터 요망에 의하여	11.2%
4. 선진적인 대치를 어필하고 싶어서	3.7%
5. 금융기관에서 용자를 받기 위하여(회계참여 설치회사 대상)	3.4%
6. 기 타	3.6%
7. 무회답	44.5%

(4) 사회적 요청

회계참여 설치회사를 대상으로 융자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수 ..42

(내역)

용자기관	수
전국신용보증협회 연합회	1
동경都、사이타마현、오오사카府、 나라현	4
은행	15
신용금고	19
신용조합	3
합계	42

(2009년8월26일 현재)